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8

발의연월일: 2020. 6. 10.

발 의 자:구자근ㆍ권성동ㆍ김정재

김석기・강기윤・송언석

정진석 · 권명호 · 김태흠

정희용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시장은 부동산 규제에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주택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지방은 자동차, 조선 등 지역기반산업 침체가 동반되어 2020년 4월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주택 36,629호 중 90%인 32,846호가 지방에 있으며, 아파트가 완공되고도 분양되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13,590호 적체 되고, 거래 감소에따른 공인중개사, 이사, 인테리어 등 연관산업 일자리 감소와 건설사의유동성 악화로 주택공급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지방의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5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5(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거주자가 2020년 7월 1일 현재 수도권 밖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주택을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1조의5(지방 미분양 주택에
	<u>대한 감면) 거주자가 2020년 7</u>
	월 1일 현재 수도권 밖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u>주택을 2020년 7월 1일부터 20</u>
	21년 6월 30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계약금을 납
	부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
	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을 경감한다.